

# 트럼프와 클린턴의 사회정책 개혁안

이번 선거의 핵심적인 질문은 미국이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나라, 우리가 함께 건설해야 할 미래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인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모든 미국인의 소득이 올라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여성 근로에 공정한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윤 공유에 참여하는 기업이 더 늘어나야 한다. 누군가가 이윤 창출에 기여했다면 이윤 공유에도 참여해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간호 휴가와 유급 병가가 정착 되어야 한다. 또한 누구나 육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며 빚지지 않아도 되는 대학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유한 미국인이 공정한 몫을 담당해야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야 한다.

## 첫 TV 토론

2016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지난달 26일 뉴욕 호프스트라대학교에서 열린 첫 TV 토론에서 국가 현안을 놓고 맞섰다. 토론 직후 현지 언론은 클린턴의 압승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CNN이 토론 종료 후 유권자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클린턴이 더 잘했다는 응답이 62%로 27%에 그친 트럼프를 크게 앞섰다. 11월 8일 선거일을 앞두고 10월 9일과 19일 TV 토론이 두 차례 더 열린다.

미국의 경제(번영), 발전 방향, 안보 등 국내 현안을 다룬 이날 토론에서 첫 단추를 끼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질문에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 데 그친 반면 클린턴은 다음과 같이 그녀가 생각하는 미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적인 질문은 미국이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나라, 우리가 함께 건설해야 할 미래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인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모든 미국인의 소득이 올라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여성 근로에 공정한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윤 공유(profit-sharing)에 참여하는 기업이 더 늘어나야 한다. 누군가가 이윤 창출에 기여했다면 이윤 공유에도 참여해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간호 휴가(family leave)와 유급 병가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누구나 육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며 빚지지 않아도 되는 대학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유한 미국인이 공정한 몫을 담당해야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두 후보가 밝힌 사회 부문 주요 정책 개혁안을 간략하게 정리해 소개하고자 한다.

## 의료정책

### | 트럼프의 입장

-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는 폐지되어야 한다.
-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아무 주에서나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건강보험료는 100% 소득공제해야 한다.
- 트럼프는 “보험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자는 구제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메디케이드를 통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주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 외에 뚜렷한 정책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 모든 사람에게 건강저축계좌<sup>1)</sup>(Health Savings Account)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현행 제도상 피고용인에게만 허용됨).

-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은 서비스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비용을 지원할 때 현행과 같이 일정 비율에 따른 지원 대신 총액<sup>2)</sup>(block grant)으로 지원해야 한다.
-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 | 클린턴의 입장

- 오바마케어는 확대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out-of-pocket healthcare costs)을 낮춰야 한다.
  - 최초 진료 3회까지는 본인부담금(deductible)으로 지불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한다.
  - 건강보험료의 세액공제를 강화해 건강보험거래소(exchange)에서 보험을 구매한 가족이 보험료로 소득의 8.5% 이상을 지출하지 않도록 한다.
  - 연간 소득의 5%를 초과한 의료비 본인부담금(out-of-pocket expenses)에 대해 개인에게는 2,500달러, 가족에 대해서는 5,0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누적적으로 적용한다.
  - 책임의료기구(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소속 의사와 병원이 진료 조율(care coordination)을 추구하도록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음).
  - 보험회사들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쟁 약화로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 불합리한 보험료 상승을 막고 조정하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어느 정도의 보험료율이 합리적인지, 누가 그것을 정하는지는 제시하지 않음).
  - 의료비 내역의 공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 메디케이드 확대를 승인한 주에 대해서는 확대 실시 최초 3년간 연방정부에서 100% 매칭펀드를 제공한다.
- 헬스 내비게이터<sup>3)</sup>(health navigators), 광고, 기타 홍보 활동을 통해 메디케이드나 건강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데 연간 5억 달러를 지원한다.
- 이민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보험거래소에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건강보험거래소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상품(public option)을 판매한다.

## 조세정책

### | 트럼프의 입장

#### 개인세

- 소득세 세율 구간을 현재의 7구간에서 3구간(12%, 25%, 33%)으로 줄여야 한다.
- 부부의 표준공제액은 현재 1만 2,600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개인은 1만 5,000달러까지 올린다.
- 배당금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을 20%로 제한해야 한다.
- 대체최소세<sup>4)</sup>(Alternative Minimum Tax),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해야 한다.
- 성공보수<sup>5)</sup>(carried interest)를 자본이득세율이 아닌 경상소득세율로 과세해야 한다.(자본이득세율이 경상소득세율보다 낮다.)
- 오바마케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순투자소득세<sup>6)</sup>(Net Investment Income Tax)를 폐지해야 한다. 현행 제도상 이 세는 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구의 투자소득에 적용되고 있다.

#### 법인세

-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춰야 한다.
- 외국에서 벌어들인 법인소득세의 과세 이연을 중지해야 한다. 법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송금세(repatriation tax) 10%를 부과해 미국으로 들여와야 한다.
- 이자 비용 소득공제의 상한액을 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개혁안이 실행되면 정부 부채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본다.

**트럼프 세제 개혁안의 경제적 효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개혁안이 실행되면 정부 부채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본다. 미국의 조세·재정 싱크탱크인 조세연구원(Tax Foundation)은 트럼프 안이 장기적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11.5%, 일자리를 530만 개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 세수 10조 달러가 줄어 정부 부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어번-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트럼프의 개혁안대로라면 세수가 9조 5천억 달러 줄고 모든 소득 구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입이 줄게 되며, 특히 고소득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일, 저축, 투자 유인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클린턴의 입장**

**개인세**

- 소득 5백만 달러 초과 소득자에게 최고 세율 구간에서 세율을 4% 올린 새로운 세율 구간(43.6%)을 적용해야 한다.
-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최소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버핏세<sup>7)</sup>(Buffett rule)”를 적용해야 한다.
- 항목별 공제액은 세액의 28%로 제한해야 한다.
- 자산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이득세율 구간을 현재의 2구간(단기는 1년 미만, 장기는 1년 이상)에서 7구간(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자산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다.
- 개인퇴직계좌(IRAs)와 401K<sup>8)</sup>같이 세제 혜택이 있는 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해야 한다.
- 현행 제도상 낮은 자본이득세율을 적용받는 성과보수에 경상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트럼프의 입장과 같다).
- 가족 등을 돌보는 보호자의 비용을 1,200달러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상속세율을 올려야 한다. 유산액 545만 달러, 1,000만 달러, 5,000만 달러, 5억 달러에 대해 각각 45%, 50%, 55%, 65%의 세율로 과세해야 한다.(일부 전문가들은 유산 상속 계획을 잘 세우면 세 납부를 피할 수 있어 이를 통한 세수입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인세**

- 극초단타매매<sup>9)</sup>(high-frequency trading)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
- 기업이 이윤공유제를 도입할 경우 실행 최초 2년 동안 이윤공유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 공제액은 고용인 연간 급여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된 이윤의 15%로 제한한다.
- 기업이 해외에 있는 지사에 재보험료(reinsurance premium)를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재보험료 구멍”을 막는다. 클린턴은 기업이 이 방법을 통해 납세를 회피한다고 보고 있다.

**클린턴 세제 개혁안의 경제적 효과**

세금정책센터는 클린턴의 세제 개혁으로 앞으로 10년간 세수가 1조 1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의 증세는 소득 상위 1%에서 발생할 것이다. 한계세율이 증가해 노동, 저축, 투자 유인이 줄어들 것이며 세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미국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클린턴의 개혁안으로 장기적으로 GDP가 1% 줄 것이며 일자리 31만 1,000개가 사라질 것이다. 연방정부 세수입은 5천억 달러 정도 늘어나겠지만 개혁안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증가할 세수는 1,91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 트럼프의 입장**

트럼프는 공화당 내 토론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말했으나 다른 곳에서는 시간당 7.25달러는 너무 낮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은 주정부가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세금정책센터는 클린턴의 세제 개혁으로 앞으로 10년간 세수가 1조 1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의 증세는 소득 상위 1%에서 발생할 것이다.

**| 클린턴의 입장**

국가적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2달러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 중 누구도 연금 수령액을 깎을 의사가 없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연금**

모든 미국 근로자에게 중요한 선거 이슈 중 하나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이다. 4천만 퇴직자의 중요한 소득원인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연장된 평균수명과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사회보장이사회(Social Security Board of Trustees)는 사회보장연기금 적립금 2조 8천억 달러가 2034년이 되면 모두 소진되어 향후 일괄적으로 연금급여액을 21% 깎아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은퇴자 10명 중 6명이 월 소득의 절반 정도를 연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는 썩 밝지 않은 전망이다. 이미 수많은 해결책이 제안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다.

전통적으로 양당의 대통령 후보는 사회보장연금의 재정 확충안을 놓고 항상 충돌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러 이견이 보이지만 놀라운 것은 두 후보 중 누구도 연금 수령액을 깎을 의사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퓨연구소(Pew Research Center)가 2016년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연금 수령액을 건드릴러서는 안 된다고 답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클린턴과 트럼프는 둘 다 연금은 미국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금이 깎일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두 후보의 공통된 의견은 여기서 끝난다.

트럼프 안에서 우려되는 것은 그것이 근로계층보다는 부유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 미국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 트럼프의 입장**

트럼프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면 사회보장연금 재정을 확충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안의 핵심은 소득세 납부 방식을 단순화하는 데 있다. 현재 7개로 나뉘어 있는 세율 구간을 3개(12%, 25%, 33%)로 줄이는 것이다. 이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추진해 온 세계 개혁안이기도 하다. 개인세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법인세율도 35%에서 15%로 낮추려 한다. 그렇게 하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기업의 소득 증가는 고용 및 사업 확대, 인수 및 합병 활동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안에서 우려되는 것은 그것이 근로계층보다는 부유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 미국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 부채가 늘어나 이자 지출에 국고가 낭비되고 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효과들을 상쇄할 만큼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 클린턴의 입장**

클린턴은 아픈 가족이나 친구를 돌봐야 해서 일을 쉬고 있는 보호자와 유가족 등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전체 국민을 위해서도 연금 급여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생계비 연동 연금 조정률(cost-of-living adjustments)을 낮추거나 사회보장연금제도를 일부 민영화하는 시도에 반대한다.

클린턴은 2016년 기준으로 11만 8,500달러인 사회보장연금의 고용세(payroll tax) 소득 상한선(earnings cap)을 올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고용세 소득 상한선이 있으면 모든 근로소득세는 11만 8,500달러까지만 12.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1년에 11만 8,500달러 미만의 소득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소득 전체가 사회보장세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고소득자는 소득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회보장세를 내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클린턴은 현재의 상한선을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고, 고용세 소득 상한선에서 25만 달러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하게 하되 25만 달러를 넘는 근로소득에는 다시 12.4%의 세를 부과하려는 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사회보장연금 재정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보스턴대학 은퇴연구소(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는 클린턴의 개혁안은 부족한 재정의 30%밖에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나마 30%도 연금급여가 현 수준에 머무른다는 가정하에서다.

출처

- <http://www.donaldjtrump.com/policies/tax-plan/?/positions/tax-reform>에서 2016. 10. 6. 인출.
- “What Clinton and Trump propose fo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PBS Newshour, August 3, 2016.
- [www.diffen.com/difference/Donald-Trump-vs-Hillary-Clinton](http://www.diffen.com/difference/Donald-Trump-vs-Hillary-Clinton)에서 2016. 10. 4. 인출.
- “Hillary Clinton and Donald Trump Share This Social Security Similarity”, The Motley Fool, Sep 18, 2016.

- 1) 의료비 지출을 목적으로 쓰이는 세금 면제형 계좌로 고(高)공제 건강보험(High Deductible Health Plan) 가입이 의무적으로 요구되어 주로 고공제 건강보험과 건강저축계좌가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되어 판매된다. 한 해 동안 일정한 세금 공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적립금은 의료비에 사용하며, 남은 적립금에는 비과세 이자가 가산되어 65세 이후엔 개인은퇴연금이 되는 저축성 계좌이다. 의료 IRA라고도 한다.
- 2)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원칙’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수혜자 조직이 자금 배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지방의 보건, 교육,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금을 지출하는 제도로써 연방정부가 주로 사용한다.
- 3) 소비자, 소기업 및 이들의 고용인이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정보 등 도움을 제공하는 개인 및 단체.
- 4) 경제적 이윤은 많으면서도 각종 공제를 사용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세금이다. 납세자는 정규세와 대체최소세 중 큰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 5) 사모펀드, 헤지펀드, 벤처투자 등이 투자 성공 시 대가로 공유하는 이익을 성공보수라 한다. 사모펀드는 2 대 20으로 투자 이익을 챙기는데,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 투자할 때 2%는 관리 수수료로 받고, 투자 성공 시 이익의 20%를 더 받아 간다.
- 6) 오바마케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한 소득세의 일종. 투자소득이란 이자, 배당,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열티, 그리고 납세자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 당해 소득과 투자 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이 세가 부과된다. 순 투자 소득 금액과 정해진 한계 금액을 초과하는 수정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금액을 비교한 후 더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그 금액의 3.8%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7) 워런 버핏이 부자 증세를 주장한 방안. 버핏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일반 미국 시민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다며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적어도 중산층 실효세율 이상은 되도록 세율 하한선(minimum tax rate)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8) 미국의 기업연금제도로써 401K라는 명칭은 미국의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 401조 K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매달 일정액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해 스스로의 투자 결과에 책임지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다.
- 9) 초단타매매, 극초단타매매라고도 하며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내는 주문을 수천 번 반복하는 주식 거래로서 알고리즘 매매 방식 중 하나이다.